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1. 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속서에 언급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란 이 협정 제1조보항에 정의된 서비스의 공급을 의미한다.

나. 이 협정 제1조허항의 목적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혹은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
- (2)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반활동, 그리고
- (3) 공공기관이 정부계정을 위하여 또는 정부보증 하에 또는 정부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다른 활동

다. 이 협정 제1조허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항제2호 또는 나항제3호에 언급된 어떠한 활동을 공공기관이나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이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라. 이 협정 제1조고항은 이 부속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금융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 안정성

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¹⁾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금융건전성

1)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특정분야를 보호하기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 (1)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2)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취해져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에 또는 상황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의 존속 내지 지속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 (3)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치는 최혜국 대우의 기초 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인정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기나라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밖의 국가의 금융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향후 체결될 것인지 또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정, 감독, 이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에게 협정과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자기나라와 이와 비교가능한 협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경우 동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이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 당사국이 그 밖의 국가의 금융건전성 조치에 대하여 인정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나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

금융전선성 조치 관련 사안과 다른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한다.

5.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금융서비스”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와 모든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생명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업자와 대리점 등과 같은 보험중개

(4)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 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6) 소비자신용, 담보대부,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7) 금융리스

(8) 신용, 직접지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 등 모든 지불 및 송금서비스

(9) 보증 및 약정

(10)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 거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 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바) 금괴를 포함한 다른 유통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1) 주간사로서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인수와 투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화폐증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금기금관리, 보관,
위탁 및 신탁 서비스 등과 같은 자산관리

(14)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다른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15) 금융정보 제공과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및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16)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거나 공급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공공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상업적인 조건 하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주로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금융당국 혹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또는,
- (2)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의 민간기관